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구직자 취업촉진 및
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‘각종 학교에 재학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’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청년들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. 1. ~ 1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)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“학업, 군복무,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	제5조(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상급학교 진학,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1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<단서 신설>	가. ----- - <u>다만,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u>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2 - 7193